



교 훈  
자율(自律)  
창의(創意)  
진실(眞實)

## 가정통신문

정일중학교  
청렴교육부

▣ 정읍시 충정로 511번지 <https://school.jbedu.kr/jeongil-m> ☎(063)530-3570(교무실) FAX (063)530-3566

### 청탁금지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3월 신학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에게 징계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학부모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여러 차례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드뉴스	링크 주소	QR 코드	비고
2024년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PDF) 다운로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감사관> 청정전 북교육>청렴자료실 및 나눔방>117번)	<a href="https://url.kr/cqw6ge">https://url.kr/cqw6ge</a>		

2024. 3. 18.

정일중학교장(관인 생략)

## 2024년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국민권익위원회

2024 신학기

###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Q & A

2024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국민권익위원회

적용대상

**Q1**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YES**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2**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NO**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 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적용대상

**Q3**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YES**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자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4**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NO**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기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5

**담임선생님의 경조사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축·조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NO

안됩니다.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6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NO

안됩니다.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7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NO

안됩니다.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掌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8

**학부모가 자녀의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YES

네, 가능합니다. 현재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Q9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YES

네,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Q10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에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YES

네, 가능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